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2024가단10164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교연 담당변호사 박유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변론 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10.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4.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26.부터 2023. 1.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고, 참가인은 그 이자 등으로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23. 1. 27. 위 금전관계를 정산하면서 참가인이 대여금 70,000,000원을 원고에게 2023. 7. 27.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23. 2. 2.부터 2023. 3. 28.까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로 9,800,000원을 대여하였고, 참가인은 16,9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의 누나인 피고, D은 2023. 8. 9. '현금보관증'을 제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DOCUMENT: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미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참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누나인 피고와 D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참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보증액인 60,000,000원과 위 현금보관증에서 별도로 지급을 약속한 이자로서 5,000,000원을 합한 65,000,000원 및 위 보증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기산일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

-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문서의 제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증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설령 보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대여금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공정증서를 토대로 피고를 기망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참가인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 3)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에 대한 이자 등을 수차례 지급하였는데, 그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산된 이 사건 약정 부분은 무효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약정일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²⁾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한 채무 잔액은 19,324,130원으로 이 사건 약정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추가로 7,1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액은 12,224,130원이고, 이에 부종하는 피고의 보증채무 또한 같은 액수로 소멸하므로, 피고는 위 12,224,130원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참가인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으로 지급을 약속한 6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7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그 문서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피고가 참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참가인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보증채무에 대한 별개의 이자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상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기 분리되어 있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와 D의 서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D의 서명만이 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가 위 문서의 내용과 달리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불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사표시 하자 여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망 또는 협박이 있다거나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불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21. 8. 26.부터 이 사건 약정일인 2023. 1.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수차례 대여 및 변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3) 참가인의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일까지 잔존 원리금으로 19,562,826원(= 원금 19,433,443원 + 이자 129,383원)이 남게 된다.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정산한 준소비대차계약이고, 이를 통해 참가인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그중 19,562,8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부종하는 피고의 보증채무 또한 19,562,826원에 한하여 잔존한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변제 항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23. 2. 2.부터 2023. 3. 28.까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7,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약정에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위 7,100,000원을 앞서의 잔존채무액인 19,562,826원에 충당하면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는 12,462,826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보증채무 또한 같은 액수로 잔존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참가인의 채무에 관한 보증금으로 12,462,8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23. 12. 21.(위 보증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석

별지

- 1) 참가인은 아래 3)항 부분에 한하여 피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 2)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
- 3) 원고(원고의 남편인 E의 계좌를 포함한다)와 참가인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에 따라 지급된 돈을 각

대여 및 변제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대여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금 거래가 있음을 추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